

제73차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임시총회 회의록

행사명	제73차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임시총회	
일시	2020년 2월 6일 목요일 12:00 ~ 13:00	
장소	대구대학교 성산홀 L층 강당	
참가 현황	참가대상	190명(총 조합원 194명, 휴직 4명)
	참가자	131명
	정족 성립	과반 이상 참석
안전	- 2019학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경과보고 및 인준 - 기타보고	

1. 개회

- 사무국장이 대구대학교 노동조합규약 제27조(성립 및 의결)에 따라 재적조합원 199명 중 131명 출석을 확인하여 본 총회의 성립 및 개회를 선언하다.

2. 안전 처리

- 2019학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경과보고 및 최종 합의(안) 설명

위원장이 2019학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회의 진행 경과를 보고하고, 2019학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최종 합의(안)에 대해서 2018학년도 단체협약서, 2019학년도 노동조합(안), 2019학년도 대학(안)과 비교해서 다음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다.

- * 제5조(조합형태 및 조합원의 범위): 직제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조합원 제외 범위를 수정
- * 제35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자구 수정
- * 제60조(출산지원) 가족수당 인상에 따라 폐지(단, 단체협약 체결일까지는 유효)
- * 급여인상률: 전년대비 급여동결(단, 급여의 자연호봉 승급분 제외)하되, 2019학년도 성과상여금 외 추가 상여금 지급할 예정
- * 가족수당: 둘째자녀 40,000원, 셋째 이후 자녀 60,000원으로 인상(단, 2020. 1. 1.부터 적용 및 시행)

노동조합이 제시한 다음 조항의 변경 요구 취지를 대학 측이 공감하였음을 설명

하고, 제36조(유급휴가) 제3항으로 요구한 가족돌봄휴가는 총무부에서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하게 됨을 설명하다.

- * 제3조(근로조건 저하 및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 * 제19조(신규채용 및 직종전환)
- * 제24조(고용안정)
- * 제32조(근무시간)
- * 제36조(유급휴가)
- * 제50조(직원 연구비)
- * 제59조(부가보상)

대학 측이 폐지를 요구한 다음 조항에 대하여 현행 유지로 합의했음을 설명하다

- * 제51조(퇴직보전금)
- * 제57조(체육문화행사)

위원장이 2019학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최종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질의나이의 사항이 있는지를 묻다. 조합원들이 2019학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최종 합의(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없이 동의하여 위원장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3. 기타 보고

가. 2019학년도 제3차 노사협의회 경과 보고

위원장이 2019학년도 제3차 노사협의회 진행 경과 및 합의를 통해 2019학년도 겨울방학 기간 종전과 같이 15시 이후 직원 탄력근무를 시행하게 되었음을 보고하다.

나.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창립 32주년 관련 계획

2020. 2. 13. 노동조합 창립 32주년을 기념하여 기념사를 게재하고, 기념품을 배포할 계획임을 보고하다.

4. 폐회

- 기타 별도의 조합원 질의나 의견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13:00에 폐회하다. 끝.